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2365호

옛 성동구치소 부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1. 옛 성동구치소 부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안) 수립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입안서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본 공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8월 20일
서울특별시

1. 계획의 개요

- 가. 계획명 : 옛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 나. 위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162번지 일원
- 다. 면적 : 84,432.4㎡
- 라. 사업시행자 : 서울주택도시공사(대표자 김세용)
- 마.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 가)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조서(신설)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옛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송파구 가락동 162번지 일원	-	증) 84,432.4	84,432.4	

※ 세부 구역의 범위, 계획 등은 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 및 도면으로 같음.

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 게재생략(공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2. 공람기간 및 장소

- 가. 공람기간 : 2020. 8. 21(금). ~ 2020. 9. 21(월)(토요일, 공휴일 제외)
- 나.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계획과(☎02-2147-3001),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개발계획부(☎02-3410-7590)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 다. 관계도서(입안서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 공람장소 비치

※ 입안서 도면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문은 서울시 및 송파구 홈페이지 게시

3. 주민설명회 개최일시 및 장소

가. 일시 : 2020.9.2.(수) 10:00

나. 장소 : 송파구민회관 소강당

※ 주민설명회 참여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최근 14일 이내 여행력이 있거나, 발열 또는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행사 참여가 어려울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주민의견 제출방법

가. 제출기간 : 공람기간 내 및 공람기간 끝난 후 7일 이내(' 20. 9월 28일 18시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제출(공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작성)

다. 제출장소 : 공람장소

전자우편(civil0218@seoul.go.kr), 팩스(02-2133-0737),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5. 본 열람내용은 최종결정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공공개발기획단(☎ 02-2133-8432)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개발계획부로(☎ 02-3410-7590)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2395호

상·하수도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과오납금 공시송달공고(안)

상·하수도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과오납금으로 발생한 환부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사항에 해당되는 환급권자(납부자)는 공고기간 종료시까지 환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 종료시까지 환부 신청 또는 별도의 의견제출이 없을 시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동부수도사업소에 귀속조치 됨을 알려드리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0일
서울특별시 장

1. 공고내용 : 반환기간이 5년이상 경과된 과오납 상·하수도요금 및 물이용부담금의 서울특별시 동부수도사업소 세입귀속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3. 근거법령 : 「지방재정법」 제82조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 여돈수 외 13건 (붙임 참조)
5. 송달내용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실 경우 관련규정에 의하여 보관기간, 목적 등을 확인하여 의견서